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102
------------	--------

제출년월일 : 2014.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 「도로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나.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제1호)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함

다. 위촉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8조제5항)

-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라.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2)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해촉규정 마련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 가. 「도로법」
- 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간)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4. 9. 25. ~ 10. 15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반영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권고사항 : 위원의 회피의무 불이행을 해촉 사유로 추가 규정하여 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적 통제장치(해촉) 마련

구청장 방침	심의회 상정안
제9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 ③ (생략) <u><신설></u>	제9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 ③ (구청장 방침과 같음) ④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분석평가 제외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 규칙 심의회 심의 · 의결 (2014.11.11.)
- 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호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7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회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

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촉직위원에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생략) <p>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p> <p>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기금출납원: 담당팀장</u> <p>② (생략)</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재원)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91조----- ----- -----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p> <p>①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u>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5.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생 략)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심의회에 부치는 --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 .

1. ~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한 차례만 연임----- .

- . ----- 전임위원 ----- 임기----- .

제9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92회 정례회(2014.12.0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마포구청장
- 나. 제출일 : 2014년 11월 18일(화)
- 다. 회부일 : 2014년 11월 21일(금)

3.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나. 「도로법」 전부 개정 (2014.01.14 시행 2014.07.15)
- 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2014.7.17)
-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4. 개정이유

「도로법」 전부 개정(2014.1.14, 시행 2014.7.15.)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등을 정하고자 함

5. 주요 개정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 2)
- 상위 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제1호)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8조제5항)
-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6.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 예산 조치 필요없음
- 나.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기간 : 2014.09.25~2014.10.15)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전부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안 제8조제5항에서는 그동안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았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어 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였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3.3.2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